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13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염태영 · 장종태 · 박용갑
이강일 · 김기표 · 박정현
권칠승 · 김남근 · 황명선
안도걸 · 황 희 · 김우영
안태준 · 손명수 · 백선희
박희승 · 홍기원 의원
(17인)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 · 피난 · 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 복합화 · 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 ·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 · 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

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22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둠(안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8 신설).

라.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19 신설).

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0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1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성능기반설계”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피난성능 등에 관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제8장의3에 제77조의18부터 제77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8(성능기반설계의 적용 및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2.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형태·이용특성 또는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인하여 현행 사양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학적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77조의19에 따라 성능기반설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다.

1.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관련 기준

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64조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피난에 관한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려는 설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분석 방법, 모의실험 기준, 성능 점검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9(성능기반설계의 인정 등) ①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제77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2호의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1. 제77조의18제2항 각 호의 기준 중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할 것

을 요청하는 사항 및 사유

2.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내용

3. 성능기반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와 관련된 안전·기능 향상 등의 예상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전에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4조제2항의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④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성능기반설계에 대하여 다시 인정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기반설계 인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0(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성능기반설계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7조의19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성능기반설계의 기준 및 기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성능기반설계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4. 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1(성능기반설계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능기반설계의 기준 개선 및 기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성능기반설계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21. (현행과 같음) 22. <u>“성능기반설계”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피난성능 등에 관한 목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u>
② (생 략) 제4조(건축위원회)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건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u>

2. · 3.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8(성능기반설계의 적용
및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
도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설계자는 건축물의 안전 및 기
능 향상 등을 위하여 성능기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
가첨단전략산업

2.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형
태·이용특성 또는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인하여 현행 사
양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공학적 분석을 통한 대체설계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성능
기반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
하여 제77조의19에 따라 성능기
반설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다

<신 설>

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다.

1.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관련 기준

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64조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피난에 관한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려는 설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분석 방법, 모의실험 기준, 성능 점검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19(성능기반설계의 인정 등) ①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제77조의18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완화 또는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2호의 성능기반설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

1. 제77조의18제2항 각 호의 기준 중 완화 또는 배제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및 사유

2.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내용

3. 성능기반설계를 통한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와 관련된 안전·기능 향상 등의 예상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기반설계의 인정을 받으려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전에 제77조의2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기반설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

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4조 제2항의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방청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④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성능기반설계에 대하여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기반설계 인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0(성능기반설계 전문기

<신 설>

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성능기반설계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7조의19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성능기반설계의 기준 및 기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성능기반설계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신 설>

4. 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1(성능기반설계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설계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능기반설계의 기준 개선 및 기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성능기반설계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 사업

	<u>3. 그 밖에 성능기반설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u>
--	------------------------------------